

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일부개정조례안  
검 토 보 고

### 1. 제안사유

지가공시제도를 규정하고 있는 「지가공시 및 토지 등의 평가에 관한 법률」에 지가공시제도 외에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도입하고, 토지·건물에 대한 부동산 가격의 평가 체계를 일원화 하도록 법 제명을 「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로 개정함에 따라, 우리나라 토지평가 위원회운영도 토지와 건물에 대한 가격평가사항 등을 통 위원회에서 통합 운영이 되도록 명칭의 변경과 주택가격공시 처리절차 등을 신설 개정하기 위함

### 2. 관련법령

「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」 제20조, 동법 시행령 제51조

### 3. 주요골자

- 가. 제명 "부산광역시사하구토지평가위원회설치운영조례"를 "부산광역시 사하구 부동산평가위원회 설치·운영 조례"로 변경
- 나. 기존 「토지평가위원회」 명칭을 「부동산평가위원회」로 명칭 변경  
(안 제1조)
- 다. 위 등 위원회의 심의사항 중 지가공시 심의 외에 개별주택가격 심의 절차에 관한 사항을 추가 신설함(안 제2조 각호 개정 및 신설)
- 라. 위원회의 위원해촉 조항이 없어 "위원의 해촉"에 관한 조항 신설  
(안 제3조의2 신설)
- 마. 지가공시와 주택가격공시 조사담당 주관부서가 다르므로 업무별 주관부서에서 운영토록 간사, 서기 지명 규정 개정(안 제7조)

#### 4. 검토의견

##### 본조례 개정건은

- 지난 2005. 1. 14부로 「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및 시행령」이 공포·시행됨에 따라 종전의 지가공시제도와 금번 신설된 주택가격 공시제도를 통합하여 토지·건물에 대한 부동산가격의 조사 및 평가, 공평과세의 근거를 마련하여 조세 저항을 사전 예방할 수 있고
- 개별공시지가 결정, 고시에 필요한 기준 조례와 위원회를 개정된 법령에 맞게 명칭을 변경하고 주택가격공시처리절차와 위원의 해촉 등 신설조항을 시류에 맞게 적의 조정, 정비 함으로써 부동산 가격공시제도의 조기정착과 형평과세 구현에 일조를 한다고 판단되며
- 특히 주택가격 공시제도 도입근거와 기준 조례와 각급 위원회 명칭변경 등에 관한 규정이 관련법령에 명시되어 있는 점을 감안한다면

##### 위 조례개정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.